

소 장

원 고 별지목록과 같음
피 고 대한민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70,000,000원

첨부인지금 320,000원

송달료금 40,000원

2002. 7. 25.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서울지방법원귀중

소 장

원 고 별지목록과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의정부시 가능1동 365의 16 진성빌딩 2층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장○○에게 금 4,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 중 권○○, 김○○, 남○○, 박○○, 박○○, 이○○은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자원활동가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녹색연합의 상근활동가들입니다.

2. 원고들은 2002. 5.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002 녹색순례”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원고들이 소속된 녹색연합은 1991. 6.경 창립되어 전국의 1만 5천여 회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보존활동, 야생동식물보호운동, 갯벌 살리기 운동, 농지보전 운동, 생태마을 만들기, 미군·군기지 환경문제 대응, 반핵·에너지 운동, 생태문화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입니다.

녹색연합은 1998.경부터 자연적이나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을 따라 약 10일간의 도보순례를 하며 우리 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온 몸으로 체험하며 환경운동가로서의 활기를 북돋우고, 이를 통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녹색순례를 하여 왔습니다.

1998.경에는 강화갯벌에서 새만금 간척이 진행되고 있는 동진강, 만경강까지의 도보순례를, 1999.경에는 송전철탑이 건설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과 경상도의 원전지역 곳곳을 다녔으며, 2000.경에는 땅끝 해남에서 새만금 갯벌까지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발걸음을, 특히 지난 ‘2001 국토순례’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인 최전방 DMZ를 각 현장의 군부대와 국방부의 협조 하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순례는 평화적인 순례를 지향하는 순수민간 순례행사입니다.

나. 녹색연합은 올 2002.경에도 ‘2002 녹색순례’를 계획하고 진행 하였던 바, 주제는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국토의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승화시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2002 녹색순례”는 원고들을 포함한 약 50여명(부분참석자 있어서 명확한 순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이 참석한 가운데, 2002. 5.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7박 8일의 일정으로 서울의 남산에서 출발하여 군산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평택시, 오산시,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도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순례를 하였고, 마지막날인 2002. 5. 14.경은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1번 게이트 앞에서 올해의 녹색순례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2002 녹색순례”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갑제1호증(“2002 녹색순례”에 대한 보도자료) 참조)

3. 경찰들은 원고들의 적법한 집회신고 후의 귀가를 방해하고 감금하였으며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가. 원고들은 집회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2002 녹색순례” 보고대회행사를 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02 녹색순례” 보고대회 하루 전인 2002. 5. 13.경 마지막 숙소인 서울 도봉구 우이동 소재 숙박업소인 아람장에 도착하여 20:00경부터 잠을 자고 다음날인 14.경 새벽 04:경에 일어나 보고대회가 열릴 장소인 용산 미8군 미군기지 1번 게이트 앞을 향하여 출발, 오전 09:40경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주차장에 도착,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휴식을 취한 후 오전 10:5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예정시간인 11:00경에 도착하였습니다.

위 미군기지 1번게이트에는 이미 위 보고대회를 취재하기 위하여 나온 MBC문화방송, SBS 서울방송, 인터넷 신문사인 오마이뉴스 등의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고, 많은 전투경찰들이

완전무장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다른 미군기지에서와 같이 위 보고대회를 하기 위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제2호증(옥외집회신고서) 참조)

위 보고대회는 오전 11:00경부터 시작하여 11:45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원고 서○○의 사회로, 순례활동보고와 참가자 소감, 향후 미군의 환경파괴와 관련된 향후 활동계획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1:45경 원고 서○○이 집회종료를 선언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순례단에게 녹색연합 및 녹색순례 깃발을 접을 것, 시위용품을 소지하지 말 것, 각 10미터 이상 떨어져 귀가차량이 있는 녹사평역으로 걸어 갈 것 등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순례단들은 그동안의 순례로 지친 심신을 이끌고 귀가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내서 귀가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녹사평역을 향했습니다.

나. 경찰들의 귀가 방해와 불법감금

그러나 위 보고대회 당시 주위에 있던 경찰들이 귀가하려는 원고들을 포함한 순례단들을 두 겹으로 빙둘러 쌓고 귀가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경찰에게 부당한 제지를 하지 말 것과 귀가를 막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주위에 있던 기자들도 이는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용산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원고들의 귀가를 방해하였습니다.

같은 날 12:27경 경찰은 원고들에게 핸드마이크를 통하여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산을 명령하였고 이에 불응시에는 모두 체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귀가하겠으니 포위망을 풀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원고들을 여전히 둘러싼 채 귀가를 막았습니다.

다. 경찰들의 폭행

그러던 중 13:03경 원고들을 사방으로 둘러쌌던 경찰이 녹사평과 정반대방향으로 1.5km 가량 떨어진 남영전철역방향으로 귀가하라며 남영역방향으로 포위망을 풀어 주어 원고들은 남영역 방향을 5-60미터정도 걸어갔으나 경찰은 녹사평역방향으로 귀가하라며 Hedquater 9th KSC Company문 앞에서 원고들의 귀가를 저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무슨말이냐며 남영역방면으로 가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또 녹사평역방면으로 가라고 하느냐며 이유를 묻자 경찰들은 다짜고짜 원고들을 방패로 가격하고, 목을 조이며 멱살을 잡고 쓰러져 있던 원고들을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원고 장○○는 방패로 안면을 맞아 안경이 부서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제3호증(상해진단서) 참조)

원고들은 13:13경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 간부에게 폭행 등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14:10이 되어서야 원고들에게 귀가하라며 둘러쌌던 포위망을 풀어 주었고 성명불상의 경찰간부가 녹색연합의 사무처장인 원고 김○○에게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후 원고들은 정식으로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 위 불법감금 및 폭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고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청장은 당시 경찰은 원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하여 녹사평역으로 이동한 것을 미신고 행진으로 간주하여 차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갑제4호증(민원회신) 참조)

4. 이로 인해 원고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며 불법감금 및 폭행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적법한 집회를 마치고 귀가버스를 타기 위하여 이동하려는 원고들을 명백한 근거도 없이 미신고 행진으로 간주하고 귀가를 방해하고 2시간여 동안이나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경찰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며, 2시간이나 감금되어 있었고, 경찰의 유도로 남영역 방면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장영주는 위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지고 좌측안면부 염좌 등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인 경찰들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장영주에게 위자료 금 4,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2002 녹색순례”에 대한 보도자료	1통
1. 갑제2호증	옥외집회 신고서	1통
1. 갑제3호증	상해진단서	1통
1. 갑제4호증	민원회신	1통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2. 7. 25.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

답 변 서

사 건 2002가단 203453호 손해배상(기)
원 고 고○○ 외 33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365의 16 진성빌딩 2층)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소송 수행자 전○○, 이○○, 권○○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별지와 같습니다.

2002. 9. 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 주 현

이 일 주

권 혁 길

서울지방법원 민사87단독 귀중

[별 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1. 「경찰들은 원고들의 적법한 집회신고 후의 귀가를 방해하고 감금하였으며 폭행까지 하였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원인의 『가. 원고들은 집회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2002 녹색순례 보고대회행사(이하 집회라고 함)를 행하였습니다』란에서,

「원고들은 다른 미군기지에서도와 같이 위 보고대회를 하기 위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보고대회는 오전 11:00경부터 시작하여 11:45경까지 진행된 것으로...(이하 중략)
오전 11:45경 원고 서○○이 집회종료를 선언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순례단에게 녹색연합 및 녹색순례 깃발을 접을 것, 시위용품을 소지하지 말 것, 각 10미터 이상 떨어져 귀가차량이 있는 녹사평역으로 걸어 갈 것 등을 공지하였습니다...(이하 중략)

그동안의 지친 심신을 이끌고 귀가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내서 귀가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녹사평역을 향했습니다...(이하중략) 보고대회 당시 주위에 있던 경찰들이 귀가하려는 원고들을 포함한 순례단들을 두겹으로 빙둘러 쌓고 귀가를 방해했습니다...(이하 중략)

남영역 방향으로 5-60미터정도 걸어갔으나...(이하중략) 이에 원고들이 무슨말이냐며 남영역방면으로 가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또 녹사평역방면으로 가라고 하느냐며 이유를 묻자 경찰들은 다짜고짜 원고들을 방패로 가격하고, 목을 조이며 멱살을 잡고 쓰러져 있던 원고들을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허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 적법하게 집회를 행하였다는 주장에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집회내용은 2002년 5월 14일 11:00부터 12:00까지 미8군 1호문앞 인도상에서 '2002년 녹색순례 보고대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제출한 강제2호증을 보면 행진은 없다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행사장인 1호문 앞에서 삼각지 로타리, 전쟁기념관, 미8군 5호문앞, 7호문 앞 및 녹사평 지하철역(을제1호증)까지 1,500미터를 걸어가서 녹사평역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귀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행사깃발을 접지도 않았고 행진대형을 갖추었는바(을제2호증의 1) 이는 미8군 주위를 지나며 자신의 의사를 밝히려고 행진하려는 시도였으며,

실제로 귀가차량이 녹사평역에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사 차량이 녹사평역에 있었다 할지라도 7박8일의 일정을 마친후 원고의 표현대로 지친 심신을 이끌고 귀가하기위해 무려 1,500미터나 떨어져있는 귀가차량을 향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귀가하려면 집회 후 차량을 집회장소로 이동시켜 승차 후 귀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명백히 행진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행진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행진하였고 따라서 이는 불법집회이므로 적법한 집회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나. 경찰들의 귀가 방해와 불법감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경찰이 원고를 둘러싸고 귀가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제2호증의 2, 3)에 의하면 녹사평역으로 불법행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녹사평쪽과 차도쪽만 막고 그 반대방향을 개방하여둔 사실이 명백한 바, 감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사 일시적인 감금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원고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법령에 의한 직무행위로서 정당행위였으며,

다. 경찰들의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는 남영역방면으로 가라고 해서 갔다가 다시 경찰이 녹사평역 방면으로 가라고 하며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귀가차량을 집회에서 50미터정도 떨어진 곳(을제1호증)에 정차시킨후 그곳에서 차량을 타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차량을 10여미터 지나쳐 남영역 방향으로 진출하여 하얏기에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진행을 막게 되었으므로(을제2호증의 4) 이는 귀가의 의사가 아닌 불법행진을 하려는 명백한 행위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법령에 의한 직무행위로서 정당행위였습니다.

2. 「원고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며 불법감금 및 폭행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찰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며...(이하중략) 원고 장○○는 위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지고 좌측안면부염좌등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이하중략)원고들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자신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정당한 공무집행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령에 바탕을 둔 정당한 업무해위는 그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바,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 9. 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 ○○

이 ○○

권 ○○

서울 지방법원 민사87단독 귀중

사건 2002가단 203453호 손해배상(기)

서 증 인 부 서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갑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부합니다.

서증번호	서 증 명	인 부 내 용
갑제1호증	2002 녹색순례에 대한 보도자료	부 지
갑제2호증	옥외집회 신고서	성립인정(이익으로 원용)
갑제3호증	상해진단서	성립인정(입증취지 부인)
갑제4호증	민원회신	성립인정(이익으로 원용)

2002. 09. 0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 ○○

이 ○○

권 ○○

서울지방법원 민사87단독 귀중

을 호 증 제 출

사 건 2002가단 203453호 손해배상(기)
원 고 고○○외 3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365의 16 진성빌딩 2층)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
소송수행자 전○○, 이○○, 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사건발생주변 요도 및 관련사진을
을호증으로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을호증 제출목록

1. 을제1호증 (미8군주변 요도)
2. 을제2호증의1내지4(집회당일 관련사진)

2002. 09. 0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 ○○

이 ○○

권 ○○

서울지방법원 민사87단독 귀중

증 거 설 명 서

호증	서 증 명	작성일자	작성자	입증취지	비고
을제1호증	미8군 경비요도	2002.09.02.	소송수행자 이일주	집회장소에서 녹사평역까지의 도보이동거리 및 주변환경설명을 통하여 원고들의 행진의도가 있었음을 입증	자체작성
을제2호의1	현장사진	2002.09.02.	위와같음	집회종료 선언후에도 행진대오를 갖추후 깃발을 펼친상태로 녹사평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상태임을 입증	집회당시 촬영한 동영상상을 스냅사진으로 출력
을제2호의2	위와같음	위와같음	위와같음	일반인이 자유스럽게 통행하는 등 차도 및 미8군 출입문을 제외한 보도는 개방되어 있는바, 감금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허위임을 입증	
을제2호의3	위와같음	위와같음	위와같음	집회종료후에도 계속적인 구호제창 등으로 위법상태임을 입증	
을제2호의3	위와같음	위와같음	위와같음	원고들의 이동수단인 차량이 도착하였음에도 승차 · 해산하지 않고 경찰과의 마찰을 유도하는 장면	

2002. 09. 0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 ○○

이 ○○

권 ○○